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46,869,713	22,406,091
일반회계	668,574,095	20,057,223
특별회계	78,295,618	2,348,869
공기업특별회계	25,354,326	760,6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354,326	760,630
기타특별회계	52,941,292	1,588,23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82,685	26,481
자활기금특별회계	522,926	15,688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549,000	76,4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8,700	6,261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768,106	53,043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216,600	6,498
수질개선특별회계	46,793,275	1,403,79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955,953천원으로 하고,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